

齒科醫師 專門醫制度에 關하여

大齒協會 學術委員長 醫博

金 東 順

齒科醫師의 專門醫制度는 醫師들과 같은 時期에 實現할 수 있었다. 그러나 醫師專門醫는 政府 方針 및 醫學界의 方針에 따라 直時로 實現을 보아 10餘年經過된 것으로 推測된다. 其 當時는 齒科醫師의 專門醫制度實現에 積極性이 없었다. 醫師專門醫 制度가 實現된 初期에는 一定한 資格基準을 두어 書類審査만으로 專門醫를 가리었다. 얼마後에는 書類審査로 專門醫가 되는 方法은 없어지고 誰何를 莫論하고 試驗에 合格하여야만 專門醫가 되는 것으로 規定이 바뀌었다. 試驗制度로 되자마자 齒科醫師들은 專門醫가 되어 보겠다고 志願하여 試驗場까지 入場하고서 어떠한 事情으로 退場하여 試驗을 拒否한 事態가 展開된 바도 있다. 數年前 大齒協會總會에서 專門醫制度는 實現되어야 한다고 議決하고 專門醫推進委員會를 構成하였던 것이다. 大齒總會에서 議決된 後부터 推進하기 始作하였다. 이 問題는 거의 每年總會에서 論議되다싶이 되었다. 1967年 總會가 끝난다음 筆者가 學術委員長으로 學會長會議에서 當選되고서부터 專門醫制度를 實現하기에 必要한 實務에 가까운 일들에 着手하였다. 그리고 1968年부터는 좀더 細密한 部分까지 着手하여, 即 應試資格, 指導齒科醫師資格, 修練病院策定基準等을 大齒協會內의 齒科醫師專門醫研究委員會와 國立保健研究院長의 자문委員會인 齒科醫師專門醫資格 審議委員會에서 通過하여 1969年 12月 4日 5日에 第1回 齒科醫師專門醫 試驗을 實施하기로 公告되었으나, 應試資格門戶가 좁다는 것과 修練病院 指定에서 一流綜合病院齒科가 딱졌다는 理由로 輿論이 자자하여 不得已 當分間 延期措置를 取하게 된 것이다. 以上과 같은 過程을 거쳐서 現在에 到達한 것이다. 大齒總會에서 齒科醫師 專門醫 實現을 보기로 議決된 事項이므로 꼭 實現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齒科醫師 專門醫에 關하여 學者間에 또 會員間에 意見이 구구한 것도 事實이고 實現方法에도 意見이 百出하여 現在까지의 應試資格, 指導齒科醫師資格 및 修練病院의 基準이 이루어진 經過에 對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齒科醫師專門醫에 關한 會議에 筆者가 第一 많이 參席하여 누가 무슨 發言을 한 것까지도 重要한 것은 記憶하고 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應試資格 基準 問題

第1回 試驗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것은 全委員이 共通된 意見이었다.

國防部の Kim's plan에 依한 Intern, Resident 教育을 받은 者를 全員 應試케 하느냐 않느냐 하는 問題가 論議되었다. Intern, Resident 教育을 받았다는 點에서는 應試할 수도 있으나 齒科椅子가 1臺 乃至는 2臺만 있고 職員도 1~2名 程度의 病院齒科도 있고 이와 同時에 診療科目이 齒科로만 標榜된 境遇에 專門醫修練病院으로 策定하기는 困難하다는 理論根據에서 專門醫修練過程과 Kim's plan에 依한 教育과는 別途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專門醫하면 細分된 科目을 專門의으로 臨床修練을 하여야 하는데 齒科라는 標榜만으로 診療한 齒科에서 教育받은 것은 困難하다고 되었다. 다음은 修練年限인데 처음에는 口腔外科, 補綴科, 齒周病科, 小兒齒科 및 矯正科가 各各 5年으로 하는 것이 小委員會에서 完全 合意를 보았는데 後에 補綴學會에서는 7年으로 하겠다는 提意가 들어왔다. 지난 10月 21日 齒科醫師專門醫 資格審議委員會에서도 補綴學會長의 主張에 依하여 7年으로 議決되었다. 補綴學會長은 自己 個人意見이 아니고 學會의 意見을 代表로서 主張하였었다. 他 4科는 5年, 補綴科는 7年으로 되었고, 5年 또는 7年間 修練이 問題가 되었다. 齒科大學附屬病院에서는 Intern 1年, Resident 2年 過程 合하여 3年이고, 軍에서는 Intern 1年, Resident 3年 合하여 4年으로 되어서 不足되는 修練은 指定한 修練病院에 指導齒科醫師資格者한테 教育 받는 것으로 채우기로 하였다. 1969年 6月 5日 國立保健研究院에서 開된 審議委員會에서 Intern 과 Resident 修練과 同等한 修練을 받은 者로 應試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例를 들면 齒科大學에서 Intern, Resident 가 아니고 大學院 過程履修하는 사람도 應試케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10月 21日 審議委員會에서는 同等資格者가 應試 못하게끔 반복 議決되었다. 이와같은 內容이 公告되자 서울齒科醫師會에서는 應試의 門戶가 좁아 再考慮處하여 달라는 建議書가 大齒協會에 提出되었다.

指導齒科醫師의 資格問題

齒科醫師 專門醫가 없기 때문에 經過措置形式으로 專門醫와 同等資格者를 指導齒科醫師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機關別로 보면 大別하여 大學, 軍, 綜合病院에서의 指導齒科醫師資格基準을 定할 때 職位, 勤務年限, 實力 등으로 相當한 論議 끝에 職位를 擇하는 道理밖에는 없다 고 하여 大學에서는 助教授, 軍에서는 少領 以上으로 定하고 綜合病院齒科에서는 職位別로 階級이 없어서 같은 科에 7年 以上 勤務한 者로 定하였다. 助教授나 少領 進級도 大體로 5~7年 걸리므로 綜合病院에서는 7年 勤務로 하였고, 이만하면 應試資格修練年限 5年 以上이 됨으로 妥當하다는 結論이 내려졌다. 指導齒科醫師도 처음에는 大學에서는 副教授, 軍에서는 中領級 以上으로 定하였다가 變更한 것이다. 其 理由는 大學에서 어떤 境遇에는 助教授가 科長으로 勤務하는 實例도 있고, 軍에서는 큰 陸軍病院의 齒科部長이 中領이고 보면 그 中領의 專攻科目 하나만이 修練科目으로 認定받게 된다는 不合理的 條件이 成立됨으로 助教授와 少領으로 한 階級式 낮은 것이다. 指導齒科醫師의 資格을 이와같이 定하고 現職뿐만 아니라 一定한 年限은 소급하여 實施하게 됨으로 退職한 教授, 齒科軍醫官, 齒科科長도 該當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保社部長官으로부터 修練病院의 認可를 받은 病院에만 適用하기로 한 것은 應試者와 같다. 그리고 指導齒科醫師의 資格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試驗에 合格하여야만 專門醫가 될 수 있기 때문에 指導齒科醫師의 資格을 받은 사람도 應試할 수 있게 하였다. 指導齒科醫師가 應試 못하면 Intern이나 Resident를 修練시 教育者는 專門醫가 못되고 被教育者는 專門醫가 된다는 矛盾이 생기기 때문이다.

修練病院 問題

昨年 總會가 끝난 다음 國立保健研究院에 問議하였던 바 時急한 것이 修練病院指定이라 하였다. 專門醫研究委員會에서는 이 問題를 다루기 始作하였다. 修練病院을 論할 때에는 施設面만 가지고 議論하였다. 그러나 施設面에서 修練病院이 되었다 하여도 人的要素가 없으면 效果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判定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問題되는 것은 椅子數와 Unit 數였다. 一科에 椅子 2臺 以上으로 하고 3科 以上 分離標榜한 齒科를 擇하기로 하였다.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齒科라는 看板하나만 가지고 있는 齒科는 修練齒科로 認定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에 齒科 X-線, 病理検査室, 醫學圖書室, 技工室 등의 施設이 있는 齒科라고 判定하였다. 이와같은 事項은 큰 問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綜合病院의 齒科이기 때문에 病理検査室이나 醫學圖書室은 共同으로 使用하고 있었다. 그리고 年間 患者數도 1,000名 以上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修練病院의 基準을 定하였으나 3科 以上 分離標榜의 事項에서 받드시 專門醫施行科目만을 指適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같은 基準을 定할 때에 委員들은 全國의 綜合病院齒科施設을 擴張케 하는데도 이 基準은 促進劑가 될 것을 아울러 考慮하였다. 이 基準이 齒科醫師專門醫審議委員會에 議決되었음으로 申請을 받아 가지고 實態調査에 着手하였다. 3科 以上이 問題가 되므로 治療椅子 6臺 以上 設置된 곳이 對象이 되었다. 申請內容과 現實이 다른 處는 修練病院으로 認可를 못 받은 齒科도 있다. 實態調査에는 學術委員長인 筆者와 大齒審查理事인 趙伯元先生이 主가 되어 實施하였다. 서울市內 病院은 上記 2名과 서울特別市 齒科醫師會長 吳應瑞博士가 實態調査하였고 地方은 其 道會長과 學術理事와 中央會에서 내려가는 學術委員長이나 審查理事 一人 合쳐 3名이 出張가서 實態調査를 하였다. 其結果 서울大學校 齒大病院, 세브란스病院齒科, 光州濟衆病院齒科, 陸軍 6個病院, 海軍 3個 病院, 空軍 1個 病院의 齒科가 保社部長官의 認可로 修練病院이 된 것이다. 以上과 같이, 經過의 變하여 論하였고 齒科醫師專門醫 實現에 對한 展望에 對하여 論하고저 한다. 大齒總會의 議決事項이므로 個人의 意見에 따라 變動될 수 없는 原則으로 본다. 앞으로 大齒協會內에 있는 專門醫研究委員會와 國立保健研究院長의 咨文委員會인 齒科醫師 專門醫資格審議委員會에서 應試資格, 指導齒科醫師資格 및 修練病院指定等에 關하여 再論하게 될 것이고 其會議에서 議決되는 事로 進行될 것으로 본다.